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

2020.3.14.

- ◆ 일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나,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발생
- ◆ 지자체의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는 자체 판단 사항이나,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권고 성격의 안내 수립 배포
 - *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등
- ◆ 법적 근거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6조, 제34조
- ◆ 공개범위
 - ① 공개 대상 : 감염병환자

② 공개 범위:

◆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,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, 법령상의 제한,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

○ (개인정보) 확진자 동선공개 시 **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**

*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(20.3.9)

○ (시간) **코로나19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**

*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

○ (장소·이동수단) 확진자의 **접촉자*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**

- 시간적,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**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**을 공개함

*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, 체류기간,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

※ 동거생활, 식사, 예배, 강의, 노래방, 상담 등 비말(침방울)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

- 거주지 **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**

* 단,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

- **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,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,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** 공개함

* (건물) 특정 층 또는 호실,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, 특정 시간대 등

* (상호)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(도로명 주소 등) 확인

* (대중교통) 노선번호, 호선·호차 번호, 탑승지 및 탑승일시, 하차지 및 하차일시

- **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**

*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